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 영 속 의원)

의안 번호	23-131
----------	--------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의자 : 권영숙, 남해석,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1. 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의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 보험목적물(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도(안 제7조),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8조) 등

라. 환수조치(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마.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안 제11조)

- 구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3.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동 주민센터 포함)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풍수해보험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6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2. 30.>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22. 1. 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2. 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8. 3. 28.]

풍수해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풍수해보험료 지급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풍수해보험금 지급실적(최근5년)

보험금 지급년도	보상목적물 주소(주택)	건수	사고원인	지급보험금	보험종류
2016	도화동	1	강풍(소파)	74천원	풍수해보험3
2016	염리동	1	호우(반파)	1,200천원	풍수해보험2
2017	망월동	1	호우(침수)	1,200천원	풍수해보험2
2017	망월동	1	호우(침수)	1,200천원	풍수해보험2
2020	서교동	1	호우(침수)	2,000천원	풍수해보험1
2022	연남동	1	호우(침수)	9,778천원	풍수해보험1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물관리과 이상원
연 락 처	02-3153-9814